

## ▣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

1. 관련 규정 : 『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 
제6조 별표4(폐수배출시설)

### 2.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

○ 폐수배출시설 : 특정수질유해물질,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의 배출량이 일일 최대 0.01㎥/일 이상 배출하는 시설.

다만 폐수배출시설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0.1㎥/시간 이상 배출하는 시설

▣ 『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』 제33조 규정 위반시 조치 사항.

구 분	조치사항
1. 허가업소	변경신고 미이행 → 과태료 및 경고처분
2. 신고업소에서 특정물질 검출	무허가 또는 거짓허가 →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→ 행정처분(폐쇄명령)
3. 입지제한지역내 업소에서 특정물질 검출	무허가 또는 거짓허가 →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→ 행정처분(폐쇄명령)